

하나 행복knowhow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핵심 설명서

이 핵심설명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중권) 가입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계약은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중권) 설정약관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중권)는 다수의 연금전용 집합투자중권(이하 '연금펀드'라 한다)을 보유하는 계좌로서, 보유하는 연금펀드의 개별 집합투자규약 및 수익중권 저축약관이동시에 적용됩니다.

1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 분	ч 8		
상품 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한도 내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가능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 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발생으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가입 대상	국내 거주자		
가입 금액	- 신규시: 연금펀드 별 최저 가입금액 5만원 이상(MMF 제외) - 추가 납입시: 연금저축계좌 기준(약정한 분배비율 선택시) 최저 납입금액 5만원 이상 연금펀드 기준(고객 지정 선택시) 연금펀드 별 최저 납입금액 1만원 이상		
납입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 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적립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 요건	① 5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 ②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③ 연금개시신청 필수		
연금수령 한도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 X 120% (11-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이후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매년 재계산되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적립기간 5년 이상과 만 55세가 충족되어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합니다. 단, 2013년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연금외 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및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		
일부 인출	적립기간 및 연금지급기간 중 가능 단,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출순서 ①과세제외금액(당해연도 납입금액→ 세액광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②과세대상금액(세액광제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금)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차등하여 과세 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한도 400 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광제함. 단,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광제 불가		
보수 및 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편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하나욘행(www.hanabank.com),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연금저축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늉)
계좌 이체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2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7 8	납입시	인출시	
구 분		연금수령시	연금외수령시
	세액뀽제	연금소득세 주 1)	기타소득세 주2)
세제종류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신고대상	

- 주1) 연금소득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 X 연금소득세율*
 - * 연금소득세율(연령별 차등적용)

구 분	만70세 미만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만80세 이상
연금소득세율	5.5%	4.4%	3.3%

- 주2)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 X 기타소득세율**
 -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연금외수령시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① 천재지변
 -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 및 일부인출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

구 분	과세 대상 여부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외 수령시 과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0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운용 수익금	0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Х	과세제외	

-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기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위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상품 종류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즁권)	
-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유동자산 관리 기능의 MMF를 포함하여 최대 5개의 연금펀드 ● MMF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매수와 연금펀드의 환매자금 일시 보유를 위해 사용 ● MMF는 금융시장 관망 등에 딱른 일시적 유동자금의 단기운용을 위해 입금 가능 자산형성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금거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유 연금펀드 분배비율 지정으로 입금 금액 자동 분산 투자 - 연금펀드 간 종목 전환 및 매매를 통해 시장상황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연금저축계좌 내 집합투자중권(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투자대상 편드	- AB 글로벌 고수익 중권투자신탁(재권-재간접형) Class C-P - AB 미국 그로스 중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lass C-P - IP 모간 글로벌멀티인컴 중권자투자신탁(주식) - KB 연금가치주 중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 KB 유럽 배당 플러스 중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lass C-P - 마이다스 신성장기업포커스 중권투자신탁(주식) Class C-P - 마이다스 신성장기업포커스 중권투자신탁(주식) Class C-P - 미래에셋 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연금중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 미래에셋 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연금중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자권) - 미래에셋 고배당포커스 30 중권투자신탁 1 호(재권혼합) Class C-P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중권투자신탁(주식)혼압-재간접형)(H) Class C-P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중권투자신탁(주식혼압-재간접형)(H) Class C-P - 삼성 클래식 연금편드 6 중 (전환영 집압투자기구) 1) 삼성 클래식 연금증권 전환영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2) 삼성 클래식 인덱스 연금증권 전환영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3) 삼성 클래식 60 연금증권 전환영자투자신탁 제 1 호[자권혼합] 4) 삼성 클래식 30 연금증권 전환영자투자신탁 제 1 호[재권혼합] 5) 삼성 클래식 차이나본토 연금증권자부자신탁 제 1 호[재권 6) 삼성 클래식 차이나본토 연금증권자투자신탁 제주식 기호(재권 6) 삼성 클래식 차이나본토 연금증권자투자신탁 대주식] - 슈로더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중권투자신탁(재권혼합-재간접형) Class C-P - 신영 마라톤 중권 투자신탁(주식) Class C-P - 신영 빨류고배당 중권투자신탁(주식) Class C-P - 인역 마라톤 중권 투자신탁(주식) Class C-P - 일리안츠 유럽 배당 중권 자투자신탁(주식) 대간접형)(H) Class C(P)2 - 에셋플러스 차이나 리치투게더 연금 중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 -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H)[대출채권] Class C-P2 - 프램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자투자신탁(H)[대출채권] Class C-P2	

	-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즁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lass C-P
	- 프랭클린 연금 재팬 즁권 자투자신탁(주식)
	- 프랭클린 인디아 즁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Class C-P
	-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즁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lass PRS
	-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하이일드 중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중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중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P
	- 하나 UBS 유럽포커스즁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lassC-P
	- 하나 UBS 인 Best 연금편드 4종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1) 하나 UBS 인 Best 연금 중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4) 하나 UBS 인 Best 연금
	-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중권자투자신탁(재간접형)
	1)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25 중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0 중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5 중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40 중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45 중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글로벌채권즁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하이 실적 포커스 30 중권 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Class C-P2
	- 한국밸류 10년투자 중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Class C-P
	- 한국투자 골드플랜네비게이터 연금즁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주식)
	- 한화 연금저축 글로벌헬스케어 즁권자투자신탁(주식)
	- 연금 전용 MMF
	1) 하나 UBS 클래스원 신종 MMF S-36 호 Class C-P
	2)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MF 제 1 호[국공채] Class C-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중권)에 납입한 자금은
투자자예탁금	집합투자중권을 매입하기 전까지 투자자예탁금으로 별도 예치·운용되고 예탁금 이용료(예탁에
	따른 투자손익)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중권) 내 MMF를 매수함
	- 사전에 약정한 "상품별 분배비율"을 기준으로 연금편드 별로 입금됨.("상품별 분배비율"
입금	미지정시 MMF 매수) 다만,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할 경우 "상품 지정"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유한
	상품별로 입금금액을 지정하여 입금 가능
	- 보유상품을 한 개 또는 다수로 지정하여 환매할 수 있음
	 - 다수의 상품을 일괄 환매하여 인출할 경우 매도한 개별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인출	기준가격으로 MMF를 매입한 후 환매주기가 가장 긴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환매하여
	인출금액을 지급
	1

	- 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보유한 상품이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일 경우 해당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전환할 권리를
	가지며, 종목 전환 관련 업무절차는 개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종목전환 및 매매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품간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상품 간 때매 거래시 매도한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MMF를 매입하며, 매입할 상품의 체결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MMF를 환매하여 매입
평가금액	해당일자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즁권)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연금펀드 평가금액의 합계액
납입금액	고객이 납입한 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인출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인출순서를
8664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
	연금지급은 연령 조건(만 55세 이상)과 가입기간 조건(5년 경과)를 모두 충족해야 연금수령 개시
연금 개시 신청	신청이 가늉하며, 희망연금개시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당행에 "연금수령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연금지급이 개시됨. 단,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이후에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음
환매수수료	환매하는 집합투자즁권(펀드)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및 저축기간에 따름
양도 및 담보제공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즁권)는 양도가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한하여 담보제공이 가능함

4

가입시 유의사항

-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중권) 내 연금전용 집합투자중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즁권)는 집합투자즁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 하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 속됩니다.
-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금개시 희망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행에 "연금수령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연금수령이 개시됩니다.
- ▶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저축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연금계좌 해지시(일부 인출 포함)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세무서 발급) 및 연금납입확인서(해당 연금계좌 취급자 발급)를 제출하여 세액공제 배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기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하나은행(<u>www.hanabank.com</u>) 및 금융투자협회(<u>www.kofia.or.kr</u>)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 수익률, 수수료 율,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가입하신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은 '연금편드 수익률 보고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e-mail, 우편(자택 또는 직장) 중 수령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핵심설명서에서 안내한 세금제도 또는 상품내용을 관계 법령이나 약관 등에서 변경한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이 상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서비스 코드: 펀드상담 013)로 연락 바랍니다. 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